

# 선금 지급에 대한 검토내역서

- 건 명: 중구 구계(금호동) 도로확장 공사(2차)
- 계약상대자: 용일토건 주식회사 대표 박준상
- 계약금액(2차): 금877,830,000원(금팔억칠천칠백팔십삼만원)
- 계약 일: 2015. 4. 2.
- 준공 기한: 2015.12.31.
- 선금신청액: 금200,000,000원(금이억원정 - 24%)
- 검토 내역

연번	선금지급 조건	검 토 결 과
1	○공사, 물품제조(구매는 제외) 및 용역계약 체결하였나	○ 공사 계약 체결 ⇒ <b>적정</b> - 계약금액: 877,830,000원
2	○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	○ 기성금 지급 없음 (장기계속공사로 2차 공사 기성금 지급없음) ⇒ <b>적정</b>
3	○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여부	○ G2B 조회결과 해당사항 없음 ⇒ <b>적정</b>
4	○ 선금요청적정요율: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이하 - 공사(20억 원 미만) 선금의무지급율: 계약금액의 50%이상 - 다만,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	○ 선금지급신청율: 계약금액의 24% ⇒ 200,000,000원 <b>적정</b>
5	○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인지 여부	○ 잔여 계약이행기간 선금지급 신청일: 2015.5.22. ~ 준공기한: 2015.12.31. (220일) ⇒ <b>적정</b>

- 검토 사항 : 선금지급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급함이 타당함